

1. 개정이유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다.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
2.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예상기간을 포함한 보호조치 등의 계획
3.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 등의 이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으로 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사후관리) ①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제공받고 있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
2.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

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종료하려는 경우

3.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상태 및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 정도

2. 법 제22조의4제4항의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3.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의 제공 현황

별표 2 제1호 다목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바목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임상심리상담원”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u> ②·③ (생략) <u><신설></u>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u>법 제1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u> <u>2.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예상기간을 포함한 보호조치 등의 계획</u> <u>3.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 등의 이용</u> <u>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사후관리) ① <u>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 <u>1.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제공받고 있는 피해아동 및</u>

그 가족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

2.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종료하려는 경우

3.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상태 및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 정도

2. 법 제22조의4제4항의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3.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의 제공 현황

<u>제14조의4</u> · <u>제14조의5</u> (생략)	<u>제14조의5</u> · <u>제14조의6</u> (현행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와 같음)
------------------------------------	--